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상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8971

발의연월일: 2025. 3. 14.

발 의 자:이상휘·최수진·박상웅

정동만 • 이헌승 • 서일준

구자근 · 안철수 · 김태호

임종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는 경우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부부가 이혼할 때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는 배우자 간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측면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않고 있으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재산의 형성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속세를 부과하고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계산할 때 배우자의 기여분을 감안하여 그 한도액을 설정하려는 것임(안 제19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9조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한도금액 = (A - B + C) × D - E + F

- A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
- B: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
- C: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
- D: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(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)
- E: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 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
- F: 「민법」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배우자 상속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 거주	제19조(배우자 상속공제) ①
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	
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	
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	
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	
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.	
1.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	1
한도금액	
한도금액 = (A - B + C) × D - E A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: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발은 재산의 가액 C: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: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(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) E: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	한도금액 = (A - B + C) × D - E + F A: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: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발은 재산의 가액 C: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: 「민법」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 분(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) E: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F: 「민법」 제1008조의2에 따른 배우자의 기여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